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0가단27218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회생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용운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원

변론 종결2023. 4. 26.

판결 선고2023. 5.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1/2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9. 8. 13.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E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 접수 제10021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9. 8. 13. 체결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D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 접수 제10021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에게 2016. 5.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합계 525,586,646원 상당의 배관 자재 등을 판매하였고, E으로부터 위 판매대금 중 합계 381,704,768원을 일부 변제받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4.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잔금 143,881,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77464), E은 위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이의하였다. 1심 법원은 2020. 11. 18. 'E은 이 사건 회사에게 143,881,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회사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8758),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나. 처분행위

1) E과 피고는 2014. 7. 28.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2015년생 및 2018년생)이 있다.

2) E은 G이 사망한 후 2015. 10. 1. 동생 H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해당 부동산의 각 1/2 지분, 이하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았다.

3) E은 2019. 8. 13.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와 이혼조정에 합의하고 2019. 9. 2. 재산분할로 E이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E의 다른 채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3. 26.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중 1/2에 관하여1), 피고와 E 사이에 2019. 8. 13.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9. 2. 접수 제10021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0517).

2)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0.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544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의 채무초과 여부

1) 앞서 본 증거,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에게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 외에 아래의 채무가 있다.

I 주식회사	19,994,000	
J 주식회사	5,420,000	
서대문세무서(국세채납)	10,000,000	2019. 4. 15. 301호 압류
구로세무서(국세채납)	10,000,000	2018. 11. 1. 301호 압류
서울신용보증재단	42,443,000	
국민건강보험공단(서대문지사)	불상	2019. 2. 19. 201호 압류 2019. 6. 18. 301호 압류

2) 반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에게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적극재산이 없다.

가) 피고는 E이 이 사건 사업체의 자금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자금과 재산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고, E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 등을 변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적극재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E이 ① 2018. 1. 19. K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회사 L에 대한 1억 원의 보일러 부자재 채권을 양수하고(이하 '제1양수금 채권'), ② 2020. 6. 12. 주식회사 M(구 N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2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이하 '제2양수금 채권')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21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주식회사 L를 상대로 제1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회사가 지급명령에 이의하고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며, 이후에 E이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2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 절차해서 ○ 주식회사가 가진 재산이 100만 원 가량의 예금채권 뿐이라고 밝힌 점, E이 위 각 양수채권을 양도받았음에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과거 부과된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양수금 채권이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감정인 P의 감정평가결과, 갑 제2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부터 2019년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사실, 2019. 8. 13.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약 9억 7,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1억 4,000만 원인 사실, 국세압류채권은 2,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담보가치는 8억 1,000만 원 가량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 약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은 원래 E이 상속받은 재산인 점, E이 이 사건 사업체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등에 관한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전 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전체를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유책배우자이고 피고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1/2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E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체의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니 선의라고 항변하나, E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여 가족들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였으며, 세금을 체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일부가 압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다른 압류채권자의 채권회수 참가 가능성이 있고, E의 다른 채권자도 존재하는 점,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여부에 따라 각 구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달라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액을 넘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전체를 취소대상으로 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나경

별지

1) 위 사건에서는 판결 주문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로 특정하였다.